

1. 개정이유

통합관리사업장이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인수(합병, 양도 양수 등)하는 경우 통합허가 변경허가 시기를 정하고, 국가·지자체 소유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현실에 맞게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

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대기관리권역법”) 제17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과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동시에 적용받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시기 완화(시행규칙 제6조 제2항)

- 사업장간 합병, 시설 인수로 배출시설 등이 추가되는 경우 권리·의무승계 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자료 확보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, 권리·의무승계 후 1년 이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합리화

나.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대기오염물질은 통합허가 재검토 시 기존 설정된 허가배출기준 유지 (별표 6)

- 통합허가 사업장은 허가·변경허가 후 5년마다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하여 필요 시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나,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허

가배출기준 재검토 시 기존 허가·변경허가 시 부여된 허가배출기준
을 2029년까지 유지하고자 함

다. 허가받은 시설의 전부를 위탁운영하는 경우, 통합환경관리인은 위
탁운영사의 고용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(별표 14의 2)

- 허가받은 시설의 전부를 위탁운영하는 경우, 위탁업체 직원이 배출
시설관리 등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함에도, 통합환경관리인으로 허가
받은 사업자가 고용한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, 사업장 현실에 맞
게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 운영을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권리·의무승계 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

별표 6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202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,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나목 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.

별표 14의2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의 전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